

勞 動 經 濟 論 集
第20卷(2), 1997. 12 pp.147~169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最低賃金制의 現況과 發展方向*

俞 京 濬**

< 目 次 >

- | | |
|--------------------------------|---------------------|
| I. 序 論 | III. 生計費 算定過程 |
| II. 最低賃金 審議를 위한 生計費 構造 및 算定 概要 | IV. 最低賃金 審議를 위한 生計費 |

I. 序 論

본 연구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산정한 1997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의 일부분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매년 자체조사한 실태생계비와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생계비 인상안과 본 연구의 이론생계비안을 바탕으로 노·사·공 위원의 토의에 따라 차기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올해의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의 의견대립으로 결정시한을 넘기는 등의 진통 끝에 최종 확정되었다. 본고에서는 1997년 계산된 이론생계비의 산출과정을 토대로 이 산출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본고의 작성에 있어 표정리에 도움을 준 이상준 석사에 감사드리며, 익명의 검토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 最低賃金制와 影響率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여 이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저임금근로자 보호제도이다.¹⁾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실제로 시행하게 된 것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의 완화,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하고, 둘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생산성 향상 셋째, 저임금에 기반을 둔 경쟁을 지양하고 경영합리화를 기대한다는 데 있다. 적용대상은 <표 2>에서 보듯이 1988년 도입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으나 제조업에만 국한하였고, 1989년에는 건설업 및 광업이 추가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전산업으로 확대되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 고용형태별 구분은 없다. 즉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그 사업체의 임시·일용·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적용시기는 1993년까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유는 매년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노사간 임금교섭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어 최저임금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수혜대상을 <표 2>에서 보면 1989년의 경우 수혜대상 영향률이 전체근로자의 10.7% 수준으로 정점을 이룬 적이 있으나 그후 계속 영향률이 줄어들어 1996년 9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률은 2.4% 정도이다.

평균임금 수준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0.3~0.4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경우 비록 비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만 그 목표치는 0.4~0.5 수준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이전인 1994년에는 38%였으나, 지난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4.25달러에서 5.15달러로 인상되어 평균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이 약 45%에 이르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1993년에 55%, 프랑스의 경우는 1995년에 84%, 일본의 경우는 1995년에 36%이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음·식료품

1) 최저임금심의위원회, 1996. 5쪽.

물가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높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평균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비율의 정확한 국제

<표 1> 임금수준과 최저임금수준의 비교

(단위 : 원,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8.	1994. 9. ~ 1995. 8.	1995. 9. ~ 1996. 8.	1996. 9. ~ 1997. 8.	
(1) 최저임금 (시급)	462.50	600	690	820	925	1,005	1,085	1,170	1,275	1,400	1994년은 1994.1.~8. 적용
(2) 최저임금 (일급)	3,700	4,800	5,520	6,560	7,400	8,040	8,680	9,360	10,200	11,200	"
(3) 최저임금 (월환산급)	111,000	144,000	165,600	192,700	209,050	227,130	245,210	264,420	288,150	316,400	"
(4) 매월노동 정액급여	316,047	374,969	443,829	521,992	596,586	670,093	746,800	787,000 ¹⁾	876,466 ²⁾	-	
(5) (3)/(4)*100	35.1	38.4	37.3	36.9	35.6	33.9	32.8	33.6	32.9		1988~96. 8 평균 35.11%

주: 1) 1994년과 1995년 임금수준 평균치임.

2) 1995년과 1996년 임금수준 평균치임.

자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편람』, 1996. 12.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2> 적용연도별 수혜근로자 및 영향률

(단위 : 개, 명, %)

	적용업종	적용대상 사업체	적용대상 근로자수	수혜근로자	영향률
1988	10인 이상 제조업	34,984	2,266,675	94,410	4.2
1989	10인 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39,977	3,052,555	327,954	10.7
1990	10인 이상 전산업	78,016	4,386,041	187,405	4.3
1991	10인 이상 전산업	82,923	4,556,075	393,183	8.6
1992	10인 이상 전산업	88,771	4,620,164	391,502	8.5
1993	10인 이상 전산업	98,656	5,045,064	227,519	4.5
1994. 1. 8	10인 이상 전산업	103,774	4,916,322	102,312	2.1
1994.9~95.8	10인 이상 전산업	112,374	4,863,923	103,033	2.1
1995.9~96.8	10인 이상 전산업	117,658	5,380,697	103,191	1.9
1996.9~97.8	10인 이상 전산업	-	5,240,135	127,353	2.4

자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편람』, 1996. 12.

비교를 위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해 보면, 1996년 10인 이상 사업체에 있어 전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6,829원이고 시간급 최저임금은 1,400원으로 평균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비율은 20.5%이다. 참고로 제조업 생산직에 대한 시간당 평균임금(10인 이상 사업체)은 1996년 현재 5,244원으로 평균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비율은 26.7%이다.

2. 過去의 研究

1986년 12월에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同法 제4조).

생계비는 정책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어떤 생활모형(수준)을 설정하는가에 의해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게 마련인데, 생활모형으로서 표준적인 생활을 취하면 '표준생계비'(Normal Level), 최저생활을 설정하여 산출하면 '최저생계비'(Minimum of Health and Decency Level)가 된다. 이 외에도 생계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구제 또는 생활보호가 없이는 생계가 곤란한 수준인 '被救恤費'(Pauper Level), 그 위의 수준으로 단순히 최저한의 생존에 필요한 수준에 머무는 '最低生存費'(Minimum of Subsistence Level)가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여유있는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 '愉樂生計費'(Health and Decency Level) 등이 있다.²⁾ 결국 이러한 다섯 가지 수준의 생계비는 그 측정방법에 따라 각각 다시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준별 생계비는 실제보다는 이론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이론생계비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³⁾

우리나라에서 실태생계비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都市家計年報』로 발행)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勤勞者生計費調査」가 있다. 理論生計費로는 한국노총이 임금교섭 기초자료로 산정해 온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산정해 온 '표준생계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정기적으로 추계해 온 '최저생계비'가 대표적이며, 그 외 관련기관 또는 개별연구자들이 추계한 생계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생계비는 산정 목적과 산정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생계비'가 산정되어 최저임금 수준결정의

2) 한국노총에서는 임금인상요구지침에서 이른바 생계비규율로 유락생계비=표준생계비×1.5, 최저생계비=표준생계비×0.8, 최저생존비=표준생계비×0.5로 정한 바 있다.

3) 본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그간 매년 계속된 연구에서의 기존 분류에 따르고 있다.

참고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초기의 '표준생계비'는 일본 인사의원의 생계비 추정방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노·사·정의 관련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1988년에는 노·사·학계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실무회의를 구성하여 표준생계비를 산정하였다(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 「근로자 표준생계비 보고서」, 1988.11).

1989년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생계비분과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 산정의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생계비로 標準生計費, 韓國勞總의 (최저임금을 위한) 最低生計費 및 最審委事務局에서 조사하는 單身勤勞者 實態生計費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표준생계비와 한국노총의 생계비가 같은 이론생계비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최심위 산하 연구위원회에 생계비단일화 방안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회 위원 중 노·사·공익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실무소위는 여러 번에 걸친 논의의 결과 1990년 2월 생계비 추정방식은 현행 표준생계비방식, 생계비산정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되, 생계비의 명칭은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최임심생계비로 칭함)'로 하고 생계비산출과정에 노·사가 수시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위원회 실무소위의 합의사항을 최심위 생계비전문위원회도 추인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과 1990년에는 각각 다음해의 최저임금수준 산정을 위한 표준생계비의 산정을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朴英凡·曹尤鉉, 「標準生計費 算定에 관한 研究」, 한국노동연구원, 1989. 8. 및 朴英凡, 「1991年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算定에 관한 研究」, 한국노동연구원, 1990. 8, 강순희,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1995). 그러나 1992년도부터는 원시자료 이용상의 애로로 인하여 표준생계비의 산출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1995년부터 재개되었다. 또한 최저임금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로는 김재원(1995)이 있다.

제Ⅱ장에서는 표준생계비 구조 및 산정개요를 정리하고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최빈값을 이용하여 1997년 9월~ 1998년 8월 적용 표준생계비의 추정결과를 정리하였다.

II.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構造 및 算定概要

1.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의 定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는 최빈계층의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생계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적인 생활수준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에 대하여는 생계비산정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민생활의 생계비 실태조사를 통해 가계지출의 표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계층을 추출하여, 이 표준적인 근로자 세대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로 정의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1988년 5~7월간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통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로서 최빈값 계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비를 제시한 바 있다. 즉 여기서는 가장 빈도수가 많은 계층이 '표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계층'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이들의 생계비를 이용하여 산출된 것을 표준생계비로 정의하고 여기에 최빈값과 평균값간의 조정치를 감안한 소비지출액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임심을 위한 생계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생활실태('가계조사')를 통해 구한 가계지출 표준계층의 최저생계비로서 결국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근로자가구의 생계비를 대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계비의 분포는 소득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치우친 모양을 나타낸다. 소득 및 소비의 통계적 도수분포는 일반적으로 극단으로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를 로그를 취하면 정규분포의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다. 통계적 용어로 이를 로그노말분포(lognormal distribution)라 한다. 이러한 분포에서는 최빈값이 중요한 분석통계로 등장한다. 산출평균치나 중위값은 고액 또는 저액 지출자인 극단의 영향을 받는 데 비해서, 최빈값은 안정적이어서 주어진 계층분포의 대표성도 높고 일반상식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의 형태에 있어서는 최빈값이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최한·최빈계층에 대한 최저임금 연구에서는 최빈값 주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분석시에 최빈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값인 조정치를 각각의 소비지출액에 곱하여 이를 최저임금계층 소비지출액으로 가정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표준생계비 계산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자

료인 바 1995년의 소비지출액을 최고치와 최저치를 1000분위하여 누적도수분포표를 구한 결과를 보면 극단적인 로그노말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2.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標準生計費의 構造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이하 '최임심생계비'라 함)는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분류되며, 소비지출은 다시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분류된다.

각 생계비 구성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에 수록되어 있는데, 표준생계비 산정은 ① 식료품, ② 주거, ③ 광열·수도, ④ 가구·집기, ⑤ 피복·신발, ⑥ 보건·의료, ⑦ 교육·교양, ⑧ 교통·통신, ⑨ 기타 소비지출 및 ⑩ 비소비지출의 10개를 기본 단위로 한다.

그런데 가구구성의 유형에 따라 소비지출의 형태에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생계비 수준도 변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표준적인 가구 선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부부와 자

<표 3> 최임심 표준생계비의 구조

생 계 비	소비지출	식료품	2,600Kcal 기준(1995년에 개정됨)
		주 거	월세, 주택설비 수리비, 기타 주거비(전세 및 자가평가액)
		광열·수도	전기료, 연료비, 수도료
		가구·집기, 가사용품	일반가구, 가정용 가구, 가사서비스
		피복·신발	외의, 스웨터·셔츠, 내의, 기타 피복, 신발
		보건·의료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
		교육·교양 오락	교육, 문방구, 교양·오락
		교통·통신	공공교통, 개인교통, 통신
		기 타	담배, 잡비, 이·미용용품,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비소비지출	조 세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장분담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 타	쓰레기봉투(오물세)

녀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 중 1인만이 취업하고 있는 가구를 표준가구로 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원수별로 생계비를 산정한다.

Ⅲ. 生計費 算定過程

1. 消費支出

소비지출관련 표준생계비 비목은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나누어지는데 식료품비는 '마켓·바스켓'방식에 의한 1인가구의 식료품비가, 비식료품관련 각 비목(주거비 등 8개 비목)은 회귀방정식 추정에 의한 4인가구의 비식료품관련 비목의 값이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하여 1인가구 식료품비, 4인가구 비식료품비관련 각 비목의 값을 기초로, 각 비목별 가구간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환산승수를 이용하여 각 가구별 최임심 생계비구성 비목값이 산정된다.

우선 환산승수를 계산하고 다음으로 1인가구 식료품비, 4인가구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환산치를 산정한 후 최종적으로 가구별 소비지출액을 계산하기로 하자.

가. 환산승수

1) 환산승수의 정의

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생활수준, 생활환경, 가구원수 등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 가운데 가구원수의 차에서 기인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 가구원수간 생계비의 상관관계로서 계산되는 것이 이른바 생계비 환산승수(multiplier)이다.

환산승수는 각 가구의 비목별로 추정되는데 비목 i 의 환산승수는

$$\frac{\text{해당가구 } i\text{비목 최빈값 추정치}}{\text{4인가구 } i\text{비목 평균지출액}} \dots\dots\dots(1)$$

로 정의된다.

이러한 환산승수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는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사용한다.⁴⁾

4) 노총·경총·관계학자를 포함한 제1차 간담회에서 연간 자료 사용을 제안하였다(1995년 12월).

2) 4인가구 비목별 평균지출액 산정

1997년도의 최임심생계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1996년도(1995 4/4 ~ 1996. 3/4)⁵⁾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4인가구의 비목별 평균지출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소비지출의 구성비목 중 주거비의 평가에 문제가 있는데, 즉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상에 나타나는 주거비는 순수히 현금의 지출과 관계가 되는 월세와 그 외의 주택수리비용 등만을 포함하고 있어 기회비용개념인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계비의 개념과 관련해 생각할 때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주거비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아 이후로는 두 개의 범주를 모두 계산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적용하기로 한다.⁶⁾

<표 4> 1인 취업 근로자가구(표준가구)의 가구별 평균치

(단위 : 원)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소비지출 계 ¹⁾	1,009,270	1,134,518	1,404,523	1,493,567	1,460,341	1,505,526	1,586,482	1,562,472
식료품 ¹⁾	278,398	321,951	391,903	428,428	486,553	434,472	498,933	632,327
주거비	44,945	51,282	55,893	44,145	24,504	56,357	7,488	63,141
광열·수도	41,689	49,839	57,434	70,172	82,415	67,157	54,615	94,396
가구·집기	46,095	67,632	64,186	62,452	30,430	49,886	35,253	134,336
피복·신발	79,923	82,478	103,385	96,824	87,906	126,490	159,827	105,168
보건·의료	58,655	55,687	64,816	77,773	57,269	128,491	125,293	99,040
교육·교양	73,265	135,623	251,522	310,768	267,368	314,810	249,040	151,218
교통·통신	150,057	138,573	167,062	144,281	165,347	87,005	188,550	92,108
기타 소비	236,243	231,453	248,322	258,724	258,549	240,858	267,483	190,738
소비지출 계 ²⁾	1,356,148	1,518,331	1,882,815	2,015,954	2,147,316	1,931,401	1,939,432	1,875,177
주거비 ²⁾	337,211	372,476	491,788	526,565	698,691	407,564	360,439	277,995
비소비지출 ³⁾	71,578	94,919	145,399	125,767	182,772	78,137	123,560	106,141
저축 ⁴⁾	674,711	818,054	1,074,971	1,179,718	879,022	548,169	1,679,246	1,380,770

주 : 1)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2)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포함한 수치임.

3) 조세와 사회보장, 기타 비소비의 합계를 의미.

4) '최임심생계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참조를 위한 수치임.

3)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5) 이용가능한 최근 자료가 1996년 3/4분기까지이다.

6)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제외할 경우 월세를 사는 가구의 주거비가 전세 또는 자가일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하여 4인가구를 포함한 2~9인가구의 비목별 평균지출액의 계산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각 가구의 비목별 최빈값을 추정하기로 하자. 이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① 제1단계: 각 가구별 최빈값 계층의 설정

각 가구별 최빈값 계층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1996년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연평균을 사용하여 우선 각 가구별 log를 붙인 소비지출 총액의 평균(u)과 분산(σ^2)을 계산하여 최빈값(m)을 구한다.⁷⁾

● 최빈값(mode) 산정

mode = $e^{(\mu - \sigma^2)}$ (참고: lognormal distribution을 $dF/dx = 0$ 하면 구해짐)

$$f(x, \mu, \sigma^2) = \frac{1}{x\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_e x - \mu)^2\right] I_{(0, \infty)}(x)$$

$$\frac{df(x, \mu, \sigma^2)}{dx} = -\frac{1}{x^2\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_e x - \mu)^2\right] I_{(0, \infty)}(x)$$

$$+ \frac{1}{x\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_e x - \mu)^2\right] I_{(0, \infty)}(x) \cdot \left(-\frac{1}{2\sigma^2}\right) \times (2)(\log_e x - \mu) \cdot \frac{1}{x}$$

$$= \frac{1}{x^2\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_e x - \mu)^2\right] I_{(0, \infty)}(x) \left[-1 + \left(-\frac{1}{\sigma^2}\right)(\log_e x - \mu)\right]$$

$$= 0$$

따라서 $-\frac{1}{\sigma^2}(\log_e x - \mu) = 1$ 이고

$$\log_e x - \mu = -\sigma^2 \text{ 이며,}$$

$$\log_e x = \mu - \sigma^2 \text{ 이므로,}$$

$x = e^{\mu - \sigma^2}$ 에서 최빈값은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m_j = e^{(\mu - \sigma^2)} \dots \dots \dots (2)$$

- 여기에서 m = 소비지출 총액의 최빈값
- u = log(소비지출 총액)의 평균
- σ^2 = log(소비지출 총액)의 분산
- j = 해당가구(2인, 3인, 4인, 5인)

7) 이는 최빈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비지출의 분포가 log정규 분포 형태를 지닌다는 가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정인수(1996)에도 있으나, 본고와는 과정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최빈값 계층의 구간은 $m \pm \frac{1}{2} \sigma$ 로 설정되는데 σ^2 가 소비지출 총액의 분산
이므로 σ 는 소비지출 총액의 표준편차이다.8)

그런데 여기에서 구한 소비지출 총액의 최빈값(m)과 최빈값 계층의 소비지출 총액
의 평균값(\bar{u})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 가구별 조정계수가 필요한바, 조정계수는 다음
과 같다.

$$\frac{m_i}{u_i} \dots\dots\dots (3)$$

여기에서 \bar{u} = 최빈값 계층의 소비지출 총액의 평균값으로 정의된다.

최빈값 계층의 가구·비목별 값에 해당가구 조정계수를 곱한 값이 다음 단계 회귀방
정식 추정에 사용되는 자료이다. <표 5>는 표준가구 전체와 최빈값 계층 가구의 소비
지출 총액을 각 가구별로 비교하고 있다.

<표 5> 표준가구 대 최빈값 계층 평균소비지출액 비교

(단위 : 원)

	표준가구 전체(A)	최빈값 계층 가구(B)	B/A
2인	1,356,148	970,152	0.72
3인	1,518,331	1,096,248	0.72
4인	1,882,815	1,322,085	0.70
5인	2,015,954	1,376,734	0.68
6인	2,147,316	1,308,481	0.61
7인	1,931,401	1,419,603	0.74
8인	1,939,432	1,699,173	0.88
9인	1,875,177	1,667,290	0.89

② 제2단계: 회귀방정식 추정

그런데 여기에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1인가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단계에서 구한 2~6인 최빈값 계층 자
료를 이용해, 각 비목별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여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를 산정

8) 이러한 최빈값 계층구간이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형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m \pm \frac{1}{2} \sigma$ 는

대체로 1,000가구 이상을 표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3년의 경우 이러한 최빈값 계층은 2인가구
205가구, 3인가구 385가구, 4인가구 538가구, 5인가구 142가구로 총 1,270가구이다.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된 회귀방정식은 가구원수를 독립변수로 한

$$Y_i = a_i n^2 + b_i n + e_i \quad (a_i < 0, b_i > 0 \text{ 로 기대됨}) \dots\dots\dots (4)$$

여기에서 Y = 비목별 지출액
 n = 가구원수
 i = 해당비목
 e = 오차항

로 정의된다.⁹⁾

각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의 계수추정치가 <표 6>에 수록되어 있다.¹⁰⁾

<표 6>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a	b	R^2
소비지출	-40,524	473,417	0.93
식료품	-8,875	112,468	0.87
주거비	-11,333	126,766	0.67
광열·수도	-1,036	17,157	0.65
가구·집기	-1,328	12,731	0.21
피복·신발	-2,631	26,333	0.41
보건·의료	-2,093	19,593	0.24
교육·교양	4,465	11,617	0.49
교통·통신	-3,800	35,856	0.55
기타 소비	-7,862	73,801	0.65

주: 모든 변수의 t 값은 99%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③ 제3단계: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산정

전 단계에서 구한 비목별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를 구한 결과가 다음 <표 7>에 나타나 있다.

9) 회귀방정식을 $Y=an+b+e$ 라는 1차식에 의해 추정할 수도 있으나 가구원수가 0이면 소비지출도 0이 되어야 하고, 또한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액은 증가하나 그 증가속도는 체감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2차식을 설정하였으며, 실제 1차식으로 추정해 본 결과 소비지출액이 負(-)의 부호를 갖는 경우가 나타났고 R^2 도 상당히 낮았다. 한편 상수항을 넣은 경우 그렇지 않은 때보다 R^2 값이 낮아 상수항을 넣지 않았다.

10) 가구는 2~6인가구까지만 사용하였다. 7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각 비목별 평균값이 들쭉날쭉하여 회귀분석 시 계수값이 실제치와 다르게 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결정되었다(표 4 참조).

4) 환산승수의 산출

앞에서 환산승수는

$$\frac{\text{해당가구 비목 최빈값 추정치}}{\text{4인가구 비목 평균지출액}}$$

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표 4>에 계산되어 있으며,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표 7>에 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환산승수를 계산할 수 있다.

<표 7>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단위: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비지출	432,893	784,738	1,055,535	1,245,284	1,353,985	1,381,638
식료품	103,593	189,436	257,529	307,872	340,465	355,308
주거비	115,433	208,200	278,301	325,736	350,505	352,608
광열·수도	16,121	30,170	42,147	52,052	59,885	65,646
가구·집기	11,403	20,150	26,241	29,676	30,455	28,578
피복·신발	23,702	42,142	55,320	63,236	65,890	63,282
보건·의료	17,500	30,814	39,942	44,884	45,640	42,210
교육·교양	16,082	41,094	75,036	117,908	169,710	230,442
교통·통신	32,056	56,512	73,368	82,624	84,280	78,336
기타 소비	65,939	116,154	150,645	169,412	172,455	159,774

<표 8> 적용환산승수(1994~96년도 3개년 평균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비지출	0.31	0.56	0.76	0.91	1.00	1.04
식료품	0.27	0.50	0.68	0.81	0.89	0.93
주거비	0.22	0.41	0.56	0.68	0.75	0.79
광열·수도	0.30	0.55	0.76	0.92	1.02	1.08
가구·집기	0.19	0.33	0.44	0.50	0.52	0.50
피복·신발	0.24	0.43	0.57	0.66	0.69	0.67
보건·의료	0.27	0.48	0.63	0.72	0.76	0.73
교육·교양	0.07	0.17	0.32	0.49	0.70	0.95
교통·통신	0.19	0.33	0.43	0.49	0.52	0.59
기타 소비	0.26	0.46	0.61	0.69	0.73	0.71

즉, 예를 들어 설명하면, 2인가구 식료품비 환산승수는 2인가구 식료품비 최빈값 추정치 189,436원을 4인가구 식료품비 평균지출액 391,903원으로 나눈 0.48이 된다.

이와 같이 환산승수 정의에 따라 구한 각 가구·비목별 환산승수의 값은 1개년도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특성에 각년도의 환산승수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계산에 적용하는 환산승수는 최근 3개년의 환산승수를 평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나. 4인가구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환산치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가구 환산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첫째, 각 비목별 전표본가구의 평균치(=A)와 평균가구원수를 구한다.

둘째, 1996년 도시가계조사 기준 1인만이 취업한 근로자가구를 표본으로 비식료품관련 비목별로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이 추정된다.

$$Y_i = \hat{a}_i n^2 + \hat{b}_i n \dots\dots\dots (5)$$

여기에서 Y = 비목값
 n = 가구원수
 i = 해당 비목

비목별 식 (5)의 추정결과는 <표 6>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

셋째, <표 6>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가구원수(X)가 4인인 경우의 비목값(Y_a)과 평균가구원수인 경우의 비목값(Y_b)을 구하여 B = Y_a ÷ Y_b를 정의한다. 이렇게 하면 각 비목별로 A × B, 즉 전 표본가구 평균치에 B를 곱한 값이 4인 환산치로 정의된다. 위

<표 9>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 환산치

	전체가구 평균치(A)	4인가구 추정치(Y _a)	평균가구원수 가구 추정치(Y _b)	4인가구환산치 (A*Y _a ÷Y _b)
주 거 비	436,881	325,736	305,553	465,739
광열·수도	54,165	52,052	47,478	59,383
가구·집기	61,556	29,676	28,351	64,432
피복·신발	92,758	63,236	60,068	97,651
보건·의료	62,491	44,884	43,028	65,187
교육·교양	194,173	117,908	95,695	239,245
교통·통신	153,494	82,624	79,115	160,303
기타 소비	242,350	169,412	162,339	252,909

와 같은 과정을 거친 비식료품비 관련 4인 환산치가 <표 9>에 수록되어 있다.

다. 가구별 소비지출

이제 소비지출액을 가구별로 산출하기로 하자. 그런데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거비에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통계적 설명력도 높고 현실에도 적합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한 것만 산출하여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지출액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비소비지출액 역시 같은 기준에 의한 것임을 밝혀 둔다.

1) 식료품비

앞에서 구한 1인가구 식료품비를 토대로 하여 j 가구 식료품비는

$$1\text{인가구 식료품비} \times 30.4 \times \frac{10}{8} \times \frac{j\text{가구 식료품비 적용환산승수}}{1\text{인가구 식료품비 적용환산승수}} \dots\dots(6)$$

에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1인가구 식료품비는 2,600칼로리의 80%를 환산한 가격을 의미하며 30.4는 한 달 평균일수(365/12), 10/8은 외식비의 비중을 20%를 고려하기 위한 수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가구별 식료품비가 <표 10>의 식료품비 값이다.

2) 비식료품비

비식료품관련 i 비목 · j 가구의 값은 4인가구 환산치에 i 비목 · j 가구 적용 환산승수를

<표 10> 가구별 최임심표준생계비의 소비지출

(단위: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 계	433,918	798,885	1,113,839	1,333,089	1,488,975
식료품	147,400	272,122	374,168	447,868	493,222
주거비	102,463	190,953	260,814	316,703	349,304
광열·수도	17,815	32,661	45,131	54,632	60,570
가구·집기	12,242	21,263	28,350	32,216	33,505
피복·신발	23,436	41,990	55,661	64,450	67,379
보건·의료	17,601	29,986	49,953	46,935	49,542
교육·교양	16,747	40,672	76,558	117,230	167,471
교통·통신	30,458	52,900	68,930	78,548	83,358
기타 소비	65,756	116,338	154,274	174,507	184,624
엔겔계수	34.0	34.1	33.6	33.6	33.1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표 10>에 비식료품관련 가구·비목별 값이 수록되어 있다.

2. 非消費支出

비소비지출은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 및 기타 비소비지출로 구성된다. 비소비지출금액은 1988년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법령상 실부담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합의한 결과에 따랐으며, 자세한 산출과정의 설명은 생략하고 그 결과를 <표 11>에 요약한다. 최저임금수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인가구의 경우 비소비지출 총액은 18,057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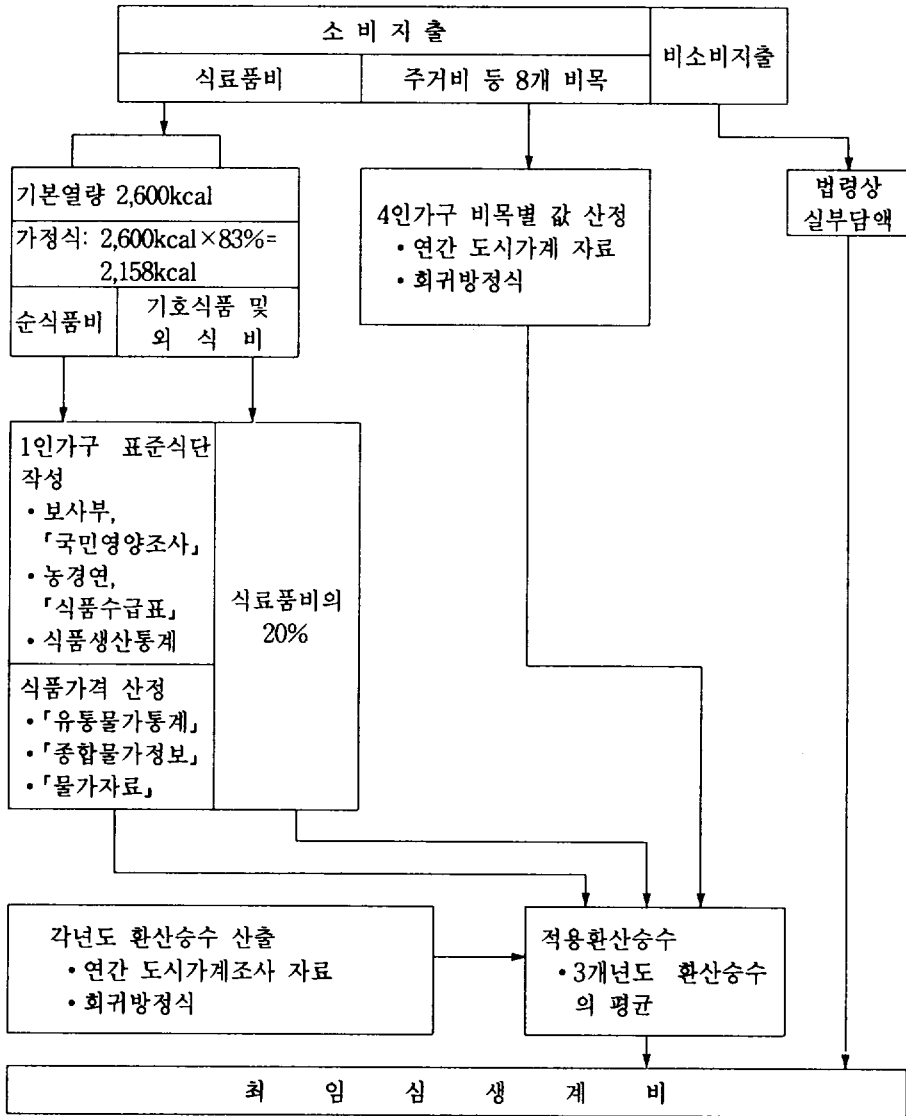
<표 11> 가구별 표준생계비의 비소비지출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	433,918	798,885	1,113,839	1,333,089	1,488,975
추정근로소득	542,397	998,607	1,392,299	1,666,361	1,861,218
조세 및 사회보장	17,467	45,939	70,325	86,572	100,743
비소비지출	18,057	47,118	72,093	88,930	103,691
소득세	0	11,460	23,550	30,040	36,130
주민세	0	860	1,766	2,253	2,710
조세액	0	12,320	25,316	32,293	38,840
의료보험	6,840	13,224	17,632	21,280	24,320
국민연금	9,000	17,400	23,200	28,000	32,000
고용보험료	1,627	2,996	4,177	4,999	5,584
사회보장분담금	17,467	33,620	45,009	54,279	61,904
기타 비소비	590	1,179	1,768	2,358	2,948

이상의 과정을 요약 설명한 최임심 표준생계비 산정방법은 [그림 1]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1] 최임심 표준생계비 산정방법



IV.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1. 本 研究에서의 改善點

본 연구는 작년도 같은 연구(정인수, 1996 참조)에서 사용한 방법을 주로 원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새로이 개선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는 분기별 자료(2/4분기)를 주로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평균 자료를 이용하였다.

둘째, 최빈계층의 계산시 분산의 자유도를 고려함으로써 노사합의에 따른 정확한 최빈계층구간을 사용하였다.

셋째, 환산승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년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2. 1人家口 18歲에 대한 年齡調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1987년 9월에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산정대상이 되는 표준 가구는 아래와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표 12 참조). 이는 최심위가 발족한 1987년의 초창기 내용으로 노·사 모두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가구원수별 평균연령도 2인 이상은 28.8~40.7세로 되어 있으나 1인가구는 18세로 정해져 있다(표 13 참조).

<표 12> 산정대상이 되는 가구

산정대상이 되는 가구구성 (표준가구)	1인 : 독신취업자(18세 정도)
	2인 : 부부(1인 취업)
	3인 : 부부와 자녀 1인(1인 취업)
	4인 : 부부와 자녀 2인(1인 취업)
	5인 : 부부와 자녀 3인(1인 취업)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1987. 9, 8쪽.

1인가구는 18세 단신근로자로 대표되는바, 1인가구는 여타 2인 이상 가구와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서 특별히 차이가 나는 만큼 ‘최임심생계비’ 계산시 연령 및 단신이라는 요소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13> 가구원수별 평균연령

(단위 : 세)

	1인	2인	3인	4인	5인
연령범위	18	28.2~29.4	29.4~31.7	31.7~33.9	33.9~47.4
평균연령	18	28.8	30.6	32.8	40.7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1987. 9., 29쪽.

본 연구의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볼 때, 1인가구에 대한 도시가계조사 자료가 원래 통계조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소비지출액을 가구원수를 대상(독립변수)으로 회귀분석하여 1인가구에 대한 추정값을 계산해 내는 관계상 추정된 1인가구 생계비에는 2인 이상 가구의 특성(혼인, 연령)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유추된다. 그럴 경우 2인 이상 가구의 연령평균이 그대로 1인가구에도 반영되고, 2인 이상 가구에서(대부분 혼인한 가구이므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1인가구 생계비가 계산되어 나온다. 이로부터 우리가 목표로 하는 1인가구 18세 단신근로자 가구의 생계비와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은 쉽게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조정한 값을 만들어야만 목표에 부합한 값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가가 연구 및 논란의 대상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귀분석시 가구원수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지 말고 연령 및 혼인 여부도 더미(dummy)변수로 추가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는 자료상의 한계로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즉 연령의 구분은 통계청 자료에 있으나 결혼 유무에 대한 변수는 통계청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연구에서, 연령조정만 한다면 실제로 결혼연령이 25세 이상인 현실이 함께 조정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체평균소비액을 단신연령그룹인 18~24세 연령그룹의 소비액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방법에 착안하여 조정하였다. 연령조정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전체평균 소비액과 18~24세 연령그룹의 비율은 0.8임.
따라서 0.8을 조정치로 사용함.
- 최빈계층 소비지출, 18~24세/전체 연령평균은 1994~96년 3개년 평균한 값이 정확히 0.8이 나온다.

3.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우선 1997년도의 경우 <표 10>의 소비지출과 <표 11>의 비소비지출을 합한 가구별 생계비가 <표 12>에 수록되어 있다. 이 표는 1인가구에 대한 최임심생계비값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표 중 첫 번째 세로줄에 나오는 1인가구 생계비는 연령조정을 안한 수치이며, 두 번째 세로줄에 나오는 1인가구 생계비는 연령조정을 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 생계비를 두 번째 세로줄에 나타나는 연령조정을 한 값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최임심을 위한 본 연구원의 공식적 1인가구 생계비 액수는 36만 4,866원이 된다. 이는 전년도에 제시한 33만 8,217원보다는 7.9% 상승한 값이며, 본 연구에서 작년도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1996년 자료에 의한 1년 전 대비로는 8.1% 상승한 값이다.

1인가구 생계비에 식료품의 경우에도 연령조정을 하는 데 대하여 한국노총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식료품은 연령조정을 안한 경우의 값보다 식료품을 연령조정된 것을 택하는 이유는 전체소비에서 연령조정(0.8)값만 알 수 있으므로 식료품

<표 12> 가구원수별 생계비

(단위 : 원)

	1인	1인 ¹⁾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 계	433,918	347,134	798,885	1,113,839	1,333,089	1,488,975
식료품	147,400	117,920	272,122	374,168	447,868	493,222
주거비	102,463	81,970	190,953	260,814	316,703	349,304
광열·수도	17,815	14,252	32,661	45,131	54,632	60,570
가구·집기	12,242	9,794	21,263	28,350	32,216	33,505
피복·신발	23,436	18,749	41,990	55,661	64,450	67,379
보건·의료	17,601	14,081	29,986	49,953	46,935	49,542
교육·교양	16,747	13,398	40,672	76,558	117,230	167,471
교통·통신	30,458	24,366	52,900	68,930	78,548	83,358
기타 소비	65,756	52,605	116,338	154,274	174,507	184,624
비소비지출	18,057	17,732	47,118	72,093	88,930	103,691
조세액	0	0	12,320	25,316	32,293	38,840
사회보장	17,467	17,142	33,620	45,009	54,279	61,904
기타 비소비	590	590	1,179	1,768	2,358	2,948
표준생계비	451,975	364,866	846,004	1,185,932	1,422,019	1,592,666

주 : 1) 18~24세 연령그룹 소비액과 전체연령그룹 소비액 비율인 0.8을 사용하여 조정한 수치임.

에 있어서는 조정하지 않을 경우 과대계산될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볼 때 18세 단신근로자가 식비가 많이 든다면 다른 비목에서 소비를 더 줄이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서 그렇게 하였다. 이 연령조정값에 대한 논쟁은 기존의 연구방법이 계속되는 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인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가 이론생계비이기 때문에 실태생계비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이론에 대한 반대이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18세 단신근로자의 식료품비에 대한 실태조사가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된다.

<표 13> 전년대비 상승률

	(단위 : %)		
	1인	1인 ^{b)}	4인
1996. 9 ~ 1997. 8 1인가구 표준생계비 (423,610원)	6.7	7.9	-
같은 방법 전년 대비	8.2	8.1	7.1

주 : 1) 18~24세 연령그룹 소비액과 전체연령그룹 소비액 비율인 0.8을 사용하여 조정한 수치에 대한 것임.

4. 生計費 推定에 대한 課題

가. 본 연구 진행상의 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비의 연령그룹별 조정의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전장에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외식비의 경우 식료품비 중 몇 %를 외식비로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본 연구에서는 20%로 하였다. 이 점도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치나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저축을 생계비에 반영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도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최저생계비에 저축을 넣는 것이 한국의 현실에서 합리적인 결정인가 하는 점과 다음으로 만약 포함시

킨다면 몇 % 정도가 소비지출 중 저축액인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가의 점에서 그렇다.

나. 최저생계비 설정 자체의 과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자체의 목적이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의 완화, 소득분배의 개선, 저임금에 기반을 둔 경쟁을 지양하고 경영합리화를 기대하는 등에 있다면, 최저임금이 시장임금의 30%대에 이르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제도의 존립 자체에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1988년에 시작된 최저생계비가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해소에 기여했다는 논문도 있으나(Fields & Yoo), 이는 199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이며, 현재 낮은 수준에 있는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다시 악화시켜 계층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업이 증가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없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는 주로 청소년 근로자에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견해가 주이므로(Ehrenberg, 1995, pp. 89~92)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다시 고려해 볼 시기라 하겠다. 또한 1997년 하반기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률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수준보다 훨씬 낮은 6.1%로(본 연구기준으로는 15.3%) 결정되었고 그 결정의 주된 이유가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을 피하기 위하여 임금의 적용시기를 연초에서 하반기로 이동한 최저임금의 또 다른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위에서 언급한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청년층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시키는 준최저임금제(subminimum wage)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청년층의 실업을 예방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도입함이 옳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적용대상 노동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전산업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국한되어 약 2%대의 수혜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991년에는 8.6%였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국내노동자에게는 적용력을 거의 상실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준거임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정작 보호가 시급한 영세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康淳熙, 『1995년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標準生計費』, 한국노동연구원, 1995. 3.
- 金在源, 『最低賃金審議制度의 改善方案』, 한국노동연구원, 1995. 12.
- 金抄逸, 『식료품비 산정방법』 한국식품위생연구원, 1997.
- 鄭寅樹, 『1996년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研究』, 한국노동연구원, 1996. 6.
- 曹尤鉉, 「'87, '88 標準生計費의 算定과 몇 가지 問題點」, 『한국경제연구』, 제38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0. 6.
- 尹辰浩, 『도시근로자 생계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6. 2.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4, 1995, 1996.
- _____, 『도시가계 조사』, 원데이프 1993, 1994, 1995, 1996.
- 의료보험업무편람, 『표준보수월액조건표』(승 제181조)
- 국민연금실무편람, 『등급별 표준소득월액표』, 1996.
- 국세청,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1993~96.
- 물가정보사, 『종합물가정보』, 1995. 12. 및 1996. 12.
-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유통물가통계』, 1995. 12 및 1996. 12.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임금교섭을 위한 활용자료』, 1997.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편람』, 1996. 12.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1995. 9.~1996. 8. 적용 최저임금심의 · 의결경위』, 1996, 12.
- Ehrenberg, Ronald G. and Robert Smith S., *Modern Labor Economics*, 1994.